

## 제7기 대학평의원회 제9회 회의록

- 일 시 : 2020. 2. 25.(화) 11:00 ~ 12:30
- 장 소 : 대학본관 3층 소회의실
- 참석자 : 김종훈, 이재설, 이용노, 이석민, 유창희, 전봉권

### ※ 회의안건

-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
-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

(김종훈 의장 기도)

의장: 간사께서 성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사: 위원 정수 11명 중에 6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습니다.

의장: 성원이 되었기에 대학평의원회 제9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.

간사께서는 전차 회의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간사: (전차회의록 보고)

의장: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의 회의 안건은 「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」, 「대학원 학칙 개정(안)」 심의입니다. 기획처장께서 회의 안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.

### 안건: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

#### - 전주대학교 학칙 제57조의2(시간제 등록생)제2항 내지 제5항 항삭제, 제6항 자구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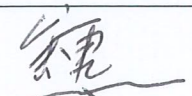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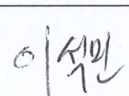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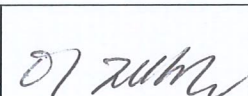
기획처장: (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)

의장: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: 세부적인 내용들이 학칙시행세칙으로 이관되는 내용인가요?

기획처장: 네. 그렇습니다.

2: 현행 제57조의2제6항의 “총장이 따로 정한다” 자구는 해석의 모호함이 있을 수 있으나, 이것을 개정(안)과 같이 학칙시행세칙으로 명문화 하면, 오히려 명확해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.

간서명	김종훈		이석민		이재설	
--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

의장: 네. 감사합니다. 그럼,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원: (의견 없습니다)

의장: 그러면, 전주대학교 학칙 제57조의2(시간제 등록생) 개정(안)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.

의장: 그러면, 이제 다음 조문 개정(안)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**안건: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**

**- 전주대학교 학칙 제3조(조직) 제1항 자구수정, 제2항 및 제3항 신설**

기획처장: (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)

의장: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현재의 가상대학 개념인 슈퍼스타칼리지에 기초융합교육원을 통합한다는 내용인거죠?

기획처장: 네. 그렇습니다. 그와 더불어 향후 영어강의 중심의 국제유학생 유치를 위한 「국제학부」와 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학사행정조직인 「융합학부」를 포괄하는 단과대학 위상의 슈퍼스타칼리지로 재편될 계획입니다.

의장: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원: (자료 검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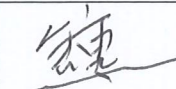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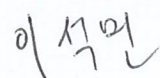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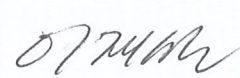
의장: 혹시 이렇게 기초융합교육원의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까요?

기획처장: 슈퍼스타칼리지를 운영하면서 의사결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, 각 학부들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의원님 말씀대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.

3: 그럼, 현행 융합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?

기획처장: 당분간은 학사업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, 연계, 융합전공 관련 기본적인 학사업무만 슈퍼스타칼리지에서 수행할 예정이며, 궁극적으로는 전체 업무를 이관할 계획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4: 제3조제1항의 자구수정 외에 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,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?

간서명	김종훈		이석민		이재설	
--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

기획처장: 「전주대학교 학칙」에서 각 단과대학을 나열하고 있는 것 외에 직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직제규정으로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제1장 총칙에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. 이것은 각 규정들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. 또한, 현행 「전주대학교 학칙」에서 각 대학원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는데, 이것은 대학원 학칙」과 중복되는 사항이므로, 기본적인 사항만 나열하고, 대학원 조직에 대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으로 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, 이 또한 각 규정들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
의장: 네. 감사합니다. 그럼, 의원님들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원: (의견 없습니다)

의장: 그러면, 전주대학교 학칙 제3조(조직) 개정(안)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.

의장: 그러면, 이제 다음 조문 개정(안)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**안건: 전주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**

**- 전주대학교 학칙 제2조(교육목표) 자구수정**

기획처장: (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)

의장: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「대학 헌장」 개정될 때, 「전주대학교 학칙」도 개정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 인거죠?

기획처장: 네. 그렇습니다. 해당 내용은 「제규정 관리규정」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에게 일주일간 공지한 사항입니다.

의장: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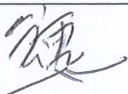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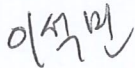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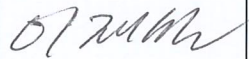
전원: (의견 없습니다)

의장: 그러면, 전주대학교 학칙 제2조(교육목표) 개정(안)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.

의장: 그러면, 이제 다음 조문 개정(안)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**안건: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**

**- 대학원 학칙 제21조(수료학점)제3항 및 제31조(학위수여)제1항 자구수정, 제35조(졸업 시험심사) 조 삭제**

간서명	김중훈		이석민		이재설	
--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

기획처장: (대학원 학칙 개정안 내용 상세 설명)

의장: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: 제31조(학위수여)의 “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” 은 학과 내규를 지칭하는 것 일까요?

기획처장: 대학원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의장: 학과에 따라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

6: 저도 동의합니다. 단순히 “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” 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라서요. 제가 보기에는 「시행세칙」 이라던가 「지침」 등의 명확한 규정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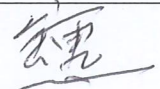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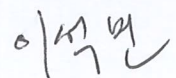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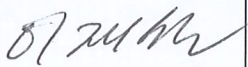
의장: 감사합니다. 혹시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원: (의견 없습니다)

의장: 그러면 「전주대학교 학칙」 의 개정(안) 안건은 아래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원 학칙 제31조(학위수여)제1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(안)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

### 대학원 학칙(제31조) 수정(안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비 고
제31조(학위수여) ① 제30조에 따른 수료자로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경우 [별표 제3호] 및 [별표 제4호]의 학위종별에 따라 [별지 제1호]부터 [별지 제5호]까지의 학위를 수여하며, 정해진 기일 내에 인증된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를 보류할 수 있다. 다만,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 청구논문 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다.	제31조(학위수여) ① ----- 다만,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외국인 유학생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 청구논문 심사 또는 학과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심사를 택할 수 있고, 이에 관하여는 대학원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	자구수정

간서명	김중훈		이석민		이재설	
-----	-----	---	-----	--	-----	---

의장: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원: (의견 없습니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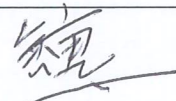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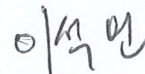

의장: 그러면,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원 학칙 제21조(수료학점), 제35조(졸업시험심사)는 원안대로 통과, 제31조(학위수여)는 수정(안)으로 통과하였음을 공포합니다.

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한편, 오늘의 회의록에 대해서 간서명을 해주실 의원 한 분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7: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의장: 감사합니다. 그럼 김종훈 의장, 이재설 부의장, 이석민 의원께서 간서명을 해주시겠습니다. 이것으로 대학평의원회 제9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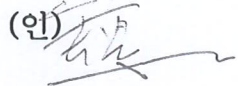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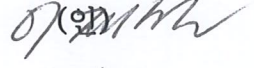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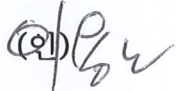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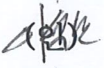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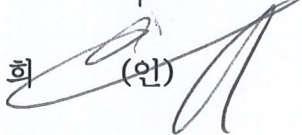
(다음 페이지 서명을 위하여 이하 여백)

간서명	김종훈		이석민		이재설	
--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

2020. 2. 25.

위의 사실을 확인함.

### 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

의 장	김 종 훈	(인) 
부 의 장	이 재 설	(인) 
의 원	이 용 노	(인) 
의 원	이 석 민	(인) 
의 원	유 창 희	(인) 
의 원	전 봉 권	(인) 